



Q. 피고인은 2008. 3.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7. 2. 2.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 2. 27.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어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와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함으로써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례에서 유죄의 판결은 단 1번만 있었으므로 사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

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스팸 보관함에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Q.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고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법원사람들)